

학점포기 규정

□ 제정 : 2014. 03. 01

□ 개정 : 2017. 05. 01

제1조(목적) 교과과정의 변경에 따라 재수강할 수 없는 폐설 교과목의 성적에 대한 학점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교과에 대한 학점포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교과) 교육과정 개편, 변경으로 인하여 대체 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폐설 교과목만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. 단, 제적생, 졸업생은 신청을 불허한다.

제3조(포기학점) 신청자격은 6학기이상 유효한 학기의 성적이 있는 자중에서 졸업직전학기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횟수는 1회에 한하며 최대 10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

제4조(포기절차) 학점포기신청은 수강신청기간 중에 포기하고자 하는 교과목별로 교과 개설 학부(과)장 및 학장의 확인을 받아 학적과에 제출한다.

제5조(성적처리) ① 포기된 학점은 성적증명서 상에서만 삭제되어져 기 취득한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되며, 학적부의 기록은 그대로 둔다.

② 성적포기 결과는 학사경고 해제 또는 장학금 수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③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규정은 200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규정은 2017학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